의 안 변호1525물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호보고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9. 2. 1.(금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1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2. 18.(월)

2. 제안이유

통합방위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변경(안 제2조)
 - 1) 기관 이름 변경: 기무부대장→제710군사안보지원부대장
 - 2) 위원의 임기: 위촉직(2년)→재임기간
- 나. 담당부서 변경(안 제5조)
 - 간 사: 총무 담당→민방위 담당
- 다.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정비 보강(안 제7조)
 - 지침에 규정→조례에 명시(지침 삭제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
- 나. 「통합방위시행령」 제8조

5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인「통합방위법」제5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.
- O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통합방위법

- 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시·도 협의회"라한다)를 두고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 - 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 협의회에 한한다.
 - 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"취약지역"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 - 2. 통합방위 대비책
 - 3.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 - 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 - 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 -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- 제9조(통합방위 지원본부) ①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·읍장·면장·동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.
 - ②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 본부(이하 "각 통합방위 지원본부"라 한다)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 - 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 - 2.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· 운영
 - 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
 - 4.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
 - 5.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
 -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통합방위법 시행령

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- 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- 2.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- 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- 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- 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- 6.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
- 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- 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- 9. 지방병무관서의 장
- 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- 11. 지방의회 의장
- 12. 지방소방관서의 장
- 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- 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 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
-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(이하 "지역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1.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
- 2.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- 3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-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-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
- 2. 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 여를 위한 홍보. 계몽 및 지원 대책
- 3. 취약지역 대비책
- 4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- 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- 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